## [별표 4] <개정 2017. 2. 13.>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구 분	세 부 기 준
1. 동의비율	가.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의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
	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
	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
	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
	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
	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3)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
	다. 입주자대표회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3)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
2. 허용행위	가. 공동주택
	1) 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로 한다.
	2)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1층을 필
	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
	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2)에 따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직증측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
	1)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증축은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증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는 주택의 증축 면적비율의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 있다.